

의안번호	2126064
의 퇴 인	조정훈 의원
회 답 일	2024.2.14.
추 계 번호	23E50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비 세액공제의 지출 한도 확대 및 사교육비 지출을 공제 대상
지출로 인정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지출되는 교육비(이하 “일반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 인정액을 확대하고 초등학생에 대해 지출하는 학원 및 체육 시설 교육비(이하 “사교육비”)를 교육비 공제대상 지출로 인정함에 따라, 소득 세수는 5년간 총 1조 1,151억원(연평균 2,23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실제 세수효과는 개인별 교육비 지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교육비 세액공제 지출 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 항목 신설 (안 제59조의4제3항)	-2,424	-2,322	-2,227	-2,135	-2,042	-11,151	-2,23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9조의 4제3항 (특별세액 공제)	○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기존 교육비 지출한도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및 초등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공제대상으로 새로 인정 －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목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교육비 지출의 상세를 열거 － (개정안)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목 외 부분 ‘교육비’를 160%까지 확대인정하고, 동조동항동호 라목 개정 및 마목 신설(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현행</th> <th>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세액공제 대상 인정 교육비 지출 한도의 확대 및 신설</td> <td>교육비</td> <td>교육비(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60% 인정)</td> </tr> <tr> <td></td> <td>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td> <td>(좌동)</td> </tr> <tr> <td></td> <td>(신설)</td> <td>초등학생에 지출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비</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세액공제 대상 인정 교육비 지출 한도의 확대 및 신설	교육비	교육비(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60% 인정)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좌동)		(신설)	초등학생에 지출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비	
	현행	개정안													
세액공제 대상 인정 교육비 지출 한도의 확대 및 신설	교육비	교육비(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60% 인정)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좌동)													
	(신설)	초등학생에 지출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비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9조의4제3항(특별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2024년 본 개정안이 의결될 시,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효과는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2026년부터 발생(징수 기준)
 -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

□ 「국세통계연보」 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총급여)규모별 및 「재정패널조사」 등을 활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 「국세통계연보」가 제공하는 총급여(종합소득)규모별 교육비 세액공제 현황(인원 및 교육비 현행 세액공제 등) 및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 인원 및 유형별 교육비 1인당 평균 지출액을 추출
 - 교육비 세액공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세액 있는 자에 대해 추계하되 해당 자료만으로는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에 한계¹⁾가 있음을 감안, 「재정패널조사」 15차 자료를 사용하여 총급여구간별 가구의 교육비 지출 중 자녀(만 0~18세)가 차지하는 비중과 유형별 교육비(일반 교육비 및 사교육비) 평균 지출액을 도출
- 세수효과는 총급여(종합소득)규모별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세수효과)에 공제인원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출
 - (일반 교육비 지출) 재정패널조사 15차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구원에 대한 일반 교육비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을 산출하되 저소득 및 고소득 가구에 대한 표본이 충분치 않은 자료의 한계를 감안하여 추계에 활용

1) 「국세통계연보」가 제공하는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대한 공제사항을 모두 포함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 인정확대 및 항목 신설의 세수효과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사교육비 지출) 일반 교육비와 동일하게 재정패널조사 15차 자료를 활용,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구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²⁾을 가구별 합산하여 1인당 평균 지출액을 도출
 - (유형별 공제 적용 대상) ① (일반 교육비 지출) 가구별 교육비 지출에서 자녀(만 0~18세)가 차지하는 비중과 평균 자녀수를 총급여규모별로 산출·적용 ② (사교육비 지출) 초등학생(만 7~12세)을 대상으로 함을 감안,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중위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일반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해당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³⁾이 모든 총급여구간에 동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
 - 실제 세수효과는 개인의 교육비 지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향후 세수효과는 대상 연령별 인구의 연도별 변화율을 적용하여 추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중위 시나리오를 활용
 - (일반 교육비) 추계기간 중 만 0~18세 인구의 연도별 증감률 적용
 - (사교육비) 추계기간 중 만 7~12세 인구의 연도별 증감률 적용
- 개정안에 따른 소득규모별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은 개정안의 소득신고 1인당 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인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최대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45만원(300만원×15%)이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
 -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지출하는 교육비를 합쳐 산출되므로 자녀 수 등 요인을 반영할 경우 실제 근로소득 신고자 1인당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음
- 세액공제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2) 개정안이 의도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내역을 모두 포함

3) 2022년 기준 35.0% 수준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일반 교육비(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대상)

□ (추계방법) 소득규모별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에 공제인원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총 세수효과 산출

- 「국세통계연보」 및 재정패널조사 15차 자료를 활용하여 총급여규모 및 가구별 일반 교육비 지출을 이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 (국세통계연보) 총급여(종합소득)규모별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 중 결정세액 있는 자에 대한 공제 적용 인원과 세액공제액 및 결정세액 현황 등 활용
 - (재정패널조사)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총급여규모·가구별 현행 일반 교육비 지출자료⁴⁾를 활용
- 재정패널조사의 과세대상 총급여규모별 연평균 교육비 지출에 확대된 공제율(지출 인정액을 160%로 확대했으므로 15%→24%)을 적용
 - 다만 실제 공제액은 현행 1인당 세액공제 인정한도(300만원×15%=45만원)와 기존 및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 공제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
- 1인당 세수효과에 공제인원 수 및 총급여규모별 평균 자녀 수를 반영하여 총 세수효과 산출
 -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인원 중 개정안의 대상이 차지하는 총급여규모별 비중(평균 74.8% 수준)과 총급여규모별 평균 자녀수를 반영
- 향후 세수효과는 2022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추계한 소득세수 변화분에 대상 인구 집단의 증감율을 반영하여 추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2026~2030년 0세~18세 중위 인구증감율 적용⁵⁾

[표 2] 일반 교육비 지출 인정한도 확대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일반 교육비 지출한도 확대 (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1,917	-1,845	-1,786	-1,731	-1,669	-8,949	-1,790

4)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및 일반 교육비 지출을 포함

5) ('26년) -3.4% ('27년) -3.7% ('28년) -3.2% ('29년) -3.1% ('30년) -3.6%

[표 3] 일반 교육비 지출 인정한도 확대에 대한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정(2022년)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규모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인원 (결정세액 있는 자)	개정안의 적용대상 ¹⁾	자녀 1인당 평균 일반 교육비 지출액 ²⁾	현행 자녀 1인당 공제액 ³⁾	개정안 자녀 1인당 공제액 ³⁾	자녀 1인당 추가 공제액	1인당 결정세액	실제 1인당 인정공제액	개정안 대상 평균 자녀수 ³⁾	총 세수효과 (억원)
	A	A'	B	$C = \min(B \times 15\%, 0.45)$	$D = \min(B \times 24\%, 0.45)$	$E = D - C$	F	$G = \min(E, F)$	H	$I = -G \times A' \times H$
총 계	2,206,872	1,967,042	0.89	0.13	0.21	0.08	4.34	0.08	1.18	-2,171
1천만원 이하	-	-	0.30	0.05	0.07	0.03	0.85	0.03	1.18	0
1.5천만원 이하	-	-	0.30	0.05	0.07	0.03	0.01	0.01	1.18	0
2천만원 이하	271	800	0.30	0.05	0.07	0.03	0.06	0.03	1.18	0
3천만원 이하	23,889	36,844	0.23	0.04	0.06	0.02	0.20	0.02	1.18	-9
4천만원 이하	100,480	110,057	0.29	0.04	0.07	0.03	0.60	0.03	1.18	-34
4.5천만원 이하	96,031	83,155	0.51	0.08	0.12	0.05	1.11	0.05	1.18	-45
5천만원 이하	123,859	126,442	0.71	0.11	0.17	0.06	1.51	0.06	1.18	-95
6천만원 이하	296,507	275,776	0.80	0.12	0.19	0.07	2.20	0.07	1.18	-234
8천만원 이하	598,543	539,216	0.89	0.13	0.21	0.08	3.82	0.08	1.18	-511
1억원 이하	403,994	327,001	1.24	0.19	0.30	0.11	7.23	0.11	1.18	-458
2억원 이하	494,576	411,744	1.46	0.22	0.35	0.13	17.44	0.13	1.26	-678
3억원 이하	46,452	32,864	1.91	0.29	0.45	0.16	53.15	0.16	1.26	-68
5억원 이하	15,538	16,484	2.03	0.31	0.45	0.14	102.25	0.14	1.26	-30
10억원 이하	5,224	5,553	2.28	0.34	0.45	0.11	213.30	0.11	1.26	-8
10억원 초과	1,508	1,157	2.50	0.37	0.45	0.08	804.90	0.08	1.26	-1

주: 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에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추출한 총급여규모 구간별 인구 비율을 적용하되,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지출 응답은 제외하여 산출
 2)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해 산출한 가구별 1인당 연평균 현행 교육비 공제대상 지출 자료를 활용하되, 저소득 및 고소득 가구에 대한 표본이 충분치 않은 재정패널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추정
 3) 총급여규모별 대상 평균 자녀수(1.18명)를 기준으로 구간별로 할당하되, 상위구간(3억원 이하~10억원 초과)은 관측치가 적으므로 해당 구간의 평균 자녀수를 활용
 1. 표본조사의 재정패널조사 특성상 가구별 교육비 지출 및 이에 기반한 세수효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및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사교육비(초등학생 대상)

□ (추계방법) 소득규모별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에 공제인원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총 세수효과 산출

- 「국세통계연보」 및 재정패널조사 15차 자료를 활용하여 총급여규모 및 가구별 사교육비 지출을 이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 － (국세통계연보) 총급여(종합소득)규모별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 중 결정세액 있는 자에 대한 공제 적용 인원과 세액공제액 및 결정세액 현황 등 활용
 - － (재정패널조사)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총급여규모별 가구별 사교육비 지출자료를 활용
- 재정패널조사의 과세대상 총급여규모별 연평균 교육비 지출에 확대된 공제율을 활용하여 소득규모별 1인당 세수효과에 공제인원 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총 세수효과 산출
 - － 다만 교육비 공제액은 유형별 교육비 지출의 합산액을 기반으로 결정되므로, 실제 세액공제액은 현행 1인당 세액공제 인정한도(45만원) 및 앞서 구한 일반 교육비 지출 인정한도 확대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출
- 소득규모별 1인당 세수효과에 공제인원 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총 세수효과 산출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중위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일반 교육비 지출 대상(만 0세~18세)에서 차지하는 개정안의 연령 비중⁶⁾이 모든 총급여구간에 동일하게 분포한다 가정
- 향후 세수효과는 2022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추계한 소득세 세수변화분에 7세~12세 인구 증감율을 반영하여 추계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2026~2030년 7세~12세 중위 인구증감율 적용⁷⁾

[표 4] 사교육비 지출의 교육비 세액공제 인정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사교육비 지출의 교육비 세액공제 인정 (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507	-477	-441	-404	-373	-2,202	-440

6) 2022년 기준 35.0% 수준

7) ('26년) -5.7% ('27년) -6.0% ('28년) -7.6% ('29년) -8.3% ('30년) -7.5%

[표 5] 사교육비 지출의 교육비 공제 인정에 대한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정(2022년)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규모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인원 (결정세액 있는 자)	개정안의 적용 대상 ¹⁾	자녀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²⁾	자녀 1인당 추가 세액공제액 ³⁾	1인당 결정세액	실제 적용 공제액 ³⁾	총 세수효과 (억원)
	A	A''	B'	$C' = \min(B' \times 24\%, 0.45 - D)$	D'	$E = \min(C', D' - G)$	$F' = -E \times A''$
총 계	2,206,872	688,965	8.26	0.24	4.34	0.24	-588
1천만원 이하	-	-	4.47	-	0.85	0.36	0
1.5천만원 이하	-	-	2.43	-	0.01	0.00	0
2천만원 이하	271	280	1.87	0.38	0.06	0.04	0
3천만원 이하	23,889	12,905	2.33	0.39	0.20	0.18	-9
4천만원 이하	100,480	38,548	4.08	0.38	0.60	0.38	-60
4.5천만원 이하	96,031	29,125	5.68	0.33	1.11	0.33	-39
5천만원 이하	123,859	44,287	6.40	0.28	1.51	0.28	-51
6천만원 이하	296,507	96,592	7.14	0.26	2.20	0.26	-103
8천만원 이하	598,543	188,863	8.26	0.24	3.82	0.24	-184
1억원 이하	403,994	114,533	11.45	0.15	7.23	0.15	-77
2억원 이하	494,576	144,215	13.47	0.10	17.44	0.10	-64
3억원 이하	46,452	11,511	17.66	0.00	53.15	0.00	0
5억원 이하	15,538	5,774	18.81	0.00	102.25	0.00	0
10억원 이하	5,224	1,945	21.09	0.00	213.30	0.00	0
10억원 초과	1,508	405	23.11	0.00	804.90	0.00	0

주: 1) 일반 교육비 지출한도 확대의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35.0%)이 총급여규모 구간에서 모두 동일하게 분포한다 가정

2)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해 산출한 가구별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 지출 자료(초등학생 대상) 자료를 활용하되, 저소득 및 고소득 가구에 대한 표본이 충분치 않은 재정패널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추정

3) 교육비 공제액에 유형별 교육비 지출의 합산액을 기반으로 결정되므로 실제 세액공제액은 현행 1인당 세액공제 인정한도(45만원) 및 앞서 구한 일반 교육비 세액공제액(D 및 G)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출

1. 표본조사의 재정패널조사 특성상 가구별 교육비 지출 및 이에 기반한 세수효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및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종합

- 일반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 인정액을 확대하고 초등학생에 대해 지출하는 사교육비를 교육비 공제대상 지출로 인정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5년간 총 1조 1,151억원(연평균 2,23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실제 세수효과는 개인별 교육비 지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교육비 세액공제 지출 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 항목 신설 (안 제59조의4제3항)	-2,424	-2,322	-2,227	-2,135	-2,042	-11,151	-2,230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문석휘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석휘	02-6788-4669	slugnoid@assembly.go.kr